

## 식품유통공학과 대학원 종합시험 관련 학과내규

2019년 7월 18일 신설

### 제1조 (종합시험)

- ① 종합시험은 식품유통공학과 대학원 「축산경영·유통경제학」 과 「식품위생안전」 전공영역에 대한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평가한다.
- ② 종합시험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.
- ③ 각 과정별 종합시험의 응시과목수, 응시자격, 응시절차 및 합격 기준 등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로 따로 정한다.
- ④ 식품유통공학과 대학원 종합시험 학과내규는 2019년 2학기 종합시험부터 적용한다.

### 제2조 (시험과목)

- ① 종합시험 과목의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,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.
- ② 종합시험 과목은 해당 학기 응시자 현황을 바탕으로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정한다.

### 제3조 (응시자격)

- ①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(석사 16학점, 박사 24학점, 통합 40학점)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② 응시자는 응시신청과 함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- ③ 응시자격 확인 서류는 취득학점 확인원 등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다.
- ④ 논문제출기한 경과자가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추기 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단, 논문제출기한 경과자는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과정 6년 이내, 박사(통합)과정 10년 이내에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.

### 제4조 (응시절차)

- ① 종합시험은 매학기 첫째 주에 시행한다.
-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학과 종합

시험 일자의 2주일 전까지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 (시험위원)

- ① 학과주임교수는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석사 학위과정은 3인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4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방향, 문항별배점,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출제한다.
- ② 해당 학기에 선정된 시험과목이 전임교원이 담당한 교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한 비전임교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#### 제6조 (출제방법)

- ①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기본으로 하며,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,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#### 제7조 (고사시간)

- ① 학기당 선정된 종합시험 교과목의 시험장소와 시간은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정하여 공고한다.

#### 제8조 (합격인정 점수)

- ①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 모든 교과목이 합격될 경우에 최종합격으로 판정한다.
- ② 합격이 인정 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한 차례의 재시험을 시행한다.

#### 제9조 (시험의 면제)

- ① 대학에서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(SSCI, SCI, SCIE) 또는 국내등재학술지(KCI)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학생은 종합시험을 면제한다.
- ② 종합시험 면제조건으로 「축산경영·유통경제학」 전공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연구재단등재지 수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연구재단등재지 2편 이상으로 한다. 단, 면제조건 논문은 학위논문과는 별개로 구분한다.
- ③ 「식품위생안전」 전공의 종합시험 면제조건은 국제저명학술지에 석사학위과정은 1편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2편 이상으로 한다.

제10조 (시험결과보고)

- ① 학과주임교수는 종합시험의 최종 결과를 매학기 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